9. 퇴직금 정리에 관한 특별규정

제정일 : 2007년 2월 2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1997년 4월 20일에 제정된 본 대학교 급여 규정 20조 퇴직급여금 조항을 폐지하고, 2006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임용 발령된 본 대학교 교직원(전임 교원 및 정식직원)의 퇴직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퇴직금 정리시기) ①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정리시기는 각 교직원의 임용 발령년 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정리계획에 따른다.

② 전항의 연차계획은 본 대학교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퇴직금 지급 기준) ① 본 대학교 급여 규정 20조 퇴직급여금 지급 조항에 따른다.

② 퇴직금 정리 일시는 2006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4조(재직기간의 계산) ①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재직기간은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발령된 날에 속하는 달부터 각 교직원의 퇴직금 연차정리계획 해당년도의 회계년도 마지막달 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.

②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정관 제41조 제5호 및 직원인 사규정 제38조 제2항의 휴직기간과 총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출장 또는 교수연구년 등를 마 치고 복직하거나 복직예정인 경우에는 만 2년까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

제5조(퇴직금 지급일)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일은 각 교직원의 퇴직금 정리계획 해당년도의 회계년도 말로 한다.

제6조(양도 및 담보의 금지)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부 칙

- 1) 이 규정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2) 본 대학교 급여규정 제20조 퇴직급여금 지급조항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